

# 2021 세법개정안

##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

###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

-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- 일자리 회복 지원
- 내수 활성화·기업환경 개선



### 포용성 및 상생·공정 기반 강화

- 상생협력기반 강화
- 서민·취약계층 지원
- 과세형평 제고



###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- 과세기반 정비
-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
- 조세제도 합리화



##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

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

### 01 국가전략기술(반도체·배터리·백신) 세제지원 강화

R&D 비용(%)	공제율			현 행			개 정		
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
일반	2	8	25	2	8	25			
신성장·원천기술	20~30	30~40	20~30	20~30	30~40				
국가전략기술	(신설)	30~40	40~50						



시설 투자(%)	공제율			현 행			개 정					
	당기분			증가분			당기분			증가분		
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	
일반	1	3	10	3	1	3	10	3				
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3	3	5	12	3				
국가전략기술	(신설)	6	8	16	4							

### 02 지식재산(IP) 시장 수요·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

현 행	< 수요 인센티브 >		< 공급 인센티브 >	
	개 정	현 행	개 정	현 행
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·중견 취득 지식재산(IP)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·중견 기술이전 소득 50% 세액감면, 일률(~'21.12.3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년 연장(~'23.12.31) 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 25% 세액감면, 일률(~'21.12.3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견기업까지 포함, 2년 연장(~'23.12.31) </li> </ul>

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

### 01 창업·벤처지원 강화

	현 행	개 정
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대상	연 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, 일률(~'21.12.31)	연 수입금액 8,000만원 이하, 3년 연장(~'24.12.31)
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	벤처기업 임직원 대상, 일률(~'21.12.31)	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, 3년 연장(~'24.12.31)

### 02 수도권 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('21~'22년)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청년·장애인 등 1인당 공제금액 (수도권 외)	중소(3년간) 1,200만원 증가(3년간) 800만원 대기업(2년간) 400만원	▶ 1,300만원 ▶ 900만원 ▶ 500만원
적용기한	일률(~'21.12.31)	▶ 3년 연장(~'24.12.31)

03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(경력단절 인정기간 : 퇴직 후 3년이상 → 2년 이상)



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

### 01 유턴기업 소득·법인세·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요건	해외사업장 양도·폐쇄·축소 후 1년 내 국내사업장 신·증설 완료	2년 내(+1년) 완료
적용기한	일률(~'21.12.31)	3년 연장(~'24.12.31)

### 02 사업재편 과세이연(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)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

	현 행	개 정
특례 적용대상	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시	자산매각 후 <b>투자 시</b> 에도 적용
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	3년	공동 사업재편 시 1년으로 축소

### 0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(한도 100만원) 적용기한 1년 연장(~'22.12.31)



기획재정부

2021

# 세법개정안

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 
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!

## 포용성 및 상생·공정 기반 강화

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①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

	현 행	개 정
공제요건	① 어음결제금액 미증가 ② 현금성결제비율 미감소	① 어음결제비율 미증가 ② <b>삭제</b>
공제율	· 15일 이내 지급: <b>0.2%</b> · 16~30일 지급: <b>0.3%</b> (+0.2%p) · 31~60일 지급: <b>0.15%</b> (+0.05%p)	· 15일 이내 지급: <b>0.5%</b> (+0.3%p) · 16~30일 지급: <b>0.3%</b> (+0.2%p) · <b>31~60일 지급: 0.15%</b> (+0.05%p)
공제대상금액	상생결제금액	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

### ②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지원대상	영업중인 소상공인, <b>'20.1.31</b> 이전 체결 임대차계약	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 <b>'20.2.1~'21.6.30</b> 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
적용기한	일몰(~21.12.31)	<b>6개월 연장(~22.6.30)</b>

### ③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공제율	경영성과급 지급액 <b>10%</b>	▶ 경영성과급 지급액 <b>15%</b> (+5%p)
공제요건	영업이익 발생	▶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
적용기한	일몰(~21.12.31)	<b>3년 연장(~24.12.31)</b>

### ④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('21.1.1~'21.12.31 기부분)

	현 행	개 정
세액공제	기부금 ×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	기부금 × <b>20%</b> (1천만원 초과분 <b>35%</b> )

서민·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.

### ①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선

	현 행	개 정
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	단독 가구 2,000만원 홀별이 가구 3,000만원 맞벌이 가구 3,600만원	▶ 2,200만원 <b>+200만원</b> <b>+30만 가구</b>
근로·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	우편	본인 신청 시 전자송달

### ② 중소기업 '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

	현 행	개 정
허용기간	직전 1개 과세연도	직전 <b>2개 연도(19, 20년)</b>

### ③ 재기 중소기업·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

	현 행	개 정
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·강제징수 유예대상	연매출액 <b>10억원</b> 미만, 일몰(~21.12.31)	연매출액 <b>15억원</b> 미만(+5억원), 2년 연장(~23.12.31)
재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	'20.7.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	'21.7.25 기준(+1년)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

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.



###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/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

### ②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

	현 행	개 정
대상범위	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 매출액 70% 이상	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 매출액 <b>50%</b> 이상(△20%)

##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

과세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.

### ①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

-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
- 거주자·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\* 확대
  - (현행)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·처분 내역 → (개정)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
-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

	현 행	개 정
세부담률 판정기준	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<b>15%</b> 이하	국내 법인세 최고세율(25%)의 <b>70%</b> 이하로 상향
특정외국법인 범위	법인에 한해 적용	법인과세 '신탁'을 포함

### ② 가상자산 암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



납세자 권리와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.

### 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

	현 행	개 정
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	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·국세 세무별·납부고지서별, 관세(세관장 징수 내국세 포함)	<b>150만원 미만(+50만원)</b> ₩ ↓
납부지연가산세율	일 0.025%	일 <b>0.019~0.022%</b>

### ② 자영업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

	현 행	개 정
매입세액공제 인정 계산서	확정신고기한 후 <b>6개월</b> 내내 발급	확정신고기한 후 <b>1년</b> 내내 발급
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	확정신고기한까지	확정신고기한 후 <b>1년</b> 까지



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.

### 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

	현 행	개 정
배당소득 특례	비과세 9% 분리과세 14% 분리과세	비과세 9% 분리과세 14% 분리과세

### ②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(HS 2022, '22.1.1)에 따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